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관련 1968

제안년월일 : 2017년 9월 1일
제 안 자 : 교 통 위 원 장

1. 수 정 이 유

○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 및 교통혼잡의 원인자를 규제함으로써 주변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나 과도한 규제시 경제활동 위축과 이용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바,

‘승합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’와 ‘주차장 축소’는 주차장을 물리적으로 변경해야 할 뿐만 아니라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상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,

‘그 밖에 부설주차장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’는 규제의 사항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조례안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는 것임

2. 주 요 골 자

가. 동 개정조례안의 제22조제1항 중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함 (안 제22조제1항)

3. 참 고 사 항 : 생 략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동 개정조례안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2조(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) ① 시장은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1. 부설주차장의 유료화

2. 주차부제의 실시. 단,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의3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등은 제외

② 제1항 각 호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하는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으로 정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2조(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등) 시장은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을 둘러싼 어느 한 도로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주 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부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장애인자동차는 제외한다.	제22조(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등) ① 시장은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	제22조(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등) ① (현행과 같음)
1. 10부제 :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E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“1”인 경우 1, 11, 21일 운행제한 한다.	1. 부설주차장의 유료화	1. ~ 2. (현행과 같음)
2. 5부제 :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“1”인 경우 1, 6, 11, 16, 21, 26일 운행제한 한다.	2. 주차부제의 실시. 단,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의3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등은 제외	
3. 2부제 :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F이하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짝수인 경우 홀수일 운행제한, 단 31일은 포함하지 않는다.	3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(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)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승합자동차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전용 주차 공간 마련	〈삭제〉
	4. 그 밖에 주차장 축소 등 부설주차장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	〈삭제〉
〈신설〉	② 제1항 각 호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하는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으로 정한다.	②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2조(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) ① 시장은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1. 부설주차장의 유료화
2. 주차부제의 실시. 단,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의3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등은 제외

② 제1항 각 호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하는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으로 정한다.

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) 시장은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을 둘러싼 어느 한 도로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주 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부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장애인자동차는 제외한다. 1. 10부제 :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E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"1"인 경우 1, 11, 21일 운행제한 한다. 2. 5부제 :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"1"인 경우 1, 6, 11, 16, 21, 26일 운행제한 한다. 3. 2부제 :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F이하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짝수인 경우 홀수일 운행제한, 단 31일은 포함하지 않는다.	제22조(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) ① 시장은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1.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2. 주차부제의 실시. 단,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의3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등은 제외
〈신설〉	② 제1항 각 호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하는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」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으로 정한다.